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187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주택공사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9. 29.

판 결 선 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46,047,62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현재 원고가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 대 12,2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6,047,626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8.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6. 11. 30.까지 [redacted]경찰청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redacted]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국가기관인 [redacted]경찰청장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한 재산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이 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이하에서 정하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재산세는 보유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닌 이상(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보유 사실만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당연한 점, ② 조세 감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③ 재산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가 제2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함께 제1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9조는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제1항의 '국가 등 소유 재산'에 준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고려에서 제2항의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또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재산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유재산법이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제1호)',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제2호)'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제1호)',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제2호)'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제5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소정의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준하는 정도로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1].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redacted]경찰청장이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인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대 11,062㎡(이하 '이 사건 청사부지용 토지'라고 한다)를 부지로 하는 '[redacted]경찰서 신규 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15. 1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청사부지용 토지로부터 1km 가량 떨어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임시 사토장 ·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청사부지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고 위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1) 대법원(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8680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09구합19762 판결이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조문으로서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과 동일한 조문이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0187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안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대상용지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위 대상용지에 관하여 임차인 [redacted]경찰청장과 임대인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2조(임대목적) 원고는 대상용지의 임대목적을 '[redacted]경찰서 신축에 따른 사토장'으로 지정하고 [redacted]경찰청장은 이를 수락하며, 그 지정된 이외의 목적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2015. 11. 10.부터 2016. 11. 30.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료) [redacted]경찰청장이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도에서 원고는 [redacted]경찰청장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특약사항-

① [redacted]경찰청장은 대상용지를 사용함에 있어 적치되어 있는 토사가 인근 도로 등으로 유출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조치함과 동시에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배수로 개설 등 각종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redacted]경찰청장은 인근주민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사적치 및 무단경작 등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시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청사부지용 토지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는 [redacted]경찰청 신규 청사 부지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가 아니고, 단지 위 신규 청사 신축 공사에 필요한 사토·기계 장비 적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청사부지용 토지로부터 1km 가량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12,299.9㎡) 역시 이 사건 청사부지용 토지 부지 면적(11,062㎡)보다도 오히려 넓은 면적이어서, 위 신규 청사 신축 공사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전체적으로 이용할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거나 위 신규 청사 신축 공사 진행 과정에서 당연히 이 사건 토지 이용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도 [redacted]경찰청장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직접 사용할 필요나 의사로 체결한 계약이라기보다는 [redacted]경찰청장이 신규 청사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상대방인 건설업체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업체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부분적으로 사용하게끔 할 의사로 체결한 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였다거나 직접적으로 경찰업무 등 인천지방경찰청장 자신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훈

판사 이기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판사 백우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별지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